

2024년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법정 의무경비 정산 등을 위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총 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262,904	255,577	7,328	2.9
일 반 회 계		171,878	171,787	92	0.1
특별회계	소 계	91,026	83,790	7,236	8.6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8,000	8,000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30	3,500	3,730	106.6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5,796	72,290	3,506	4.8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158,321	1,125,944	32,377	2.9
일 반 회 계		461,167	460,823	344	0.1
특 별 회 계	소 계	697,153	665,121	32,032	4.8
	교통사업특별회계	19,417	24,717	△5,300	△21.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30	7,000	230	3.3
	도시개발특별회계	670,506	633,404	37,102	5.9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92	-	9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3	-	83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	-	9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3,730	-	3,73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30	-	3,730	‘태릉~구레C간 도로확장’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43,506	40,000	3,506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기금	3,108	-	3,108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국고보조금 편성
지방채	국내차입금	차입금	지방공공 자금채	40,000	40,000	△4,000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 지방채 축소발행
지방채	국내차입금	차입금	지방공공 자금채			4,000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 지방채 추가발행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8	-	398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 절약’, ‘침수 우려 취약도 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124	2,780	344		
계속사업	기본경비	801	794	8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편성	-
계속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재난안전정책과)	92	-	92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관리, 재난 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계속사업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2,085	1,986	99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조기소진으로 추가 편성	p. 1,127
신규사업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	131	-	131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시기 도래에 따른 용역비 편성	p. 1,138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계 속 사 업	국고보조금 반납(도로시설과)	15	-	15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2) 교통사업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	5,300	△5,300		
계 속 사 업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	5,300	△5,300	○영등포빛물품펌프장 및 유입관로 신설 추진에 따라 착공시기 조정('24년 하→'25년 상)하여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감추경	p. 1,118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7,230	7,000	230		
계 속 사 업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500	7,000	△3,500	○구리시 실시설계 지연으로 '24년 착공이 어려워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등 감추경	p. 1,122
계 속 사 업	국고보조금 반납(도로계획과)	3,730	-	3,730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4) 도시개발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143,558	106,485	37,102		
계속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5,100	-	5,100	○수락고가 방음터널 해체 및 재설치 소요 공사비 편성	p. 1,081
계속사업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1,200	3,000	△1,800	○설계심의 등 결과 반영으로 설계용역 지연,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감추경	p. 1,085
계속사업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53,690	40,000	13,690	○1단계 구간 노후 가시설 해체 공사비 편성	p. 1,089
계속사업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10,380	5,020	5,360	○보상결정된 2개 필지 보상비 및 하반기 임료 편성	p. 1,094
계속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8,109	12,109	△4,000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감추경	p. 1,098
계속사업	성동교 확장	-	1,000	△1,000	○하천점용허가 협의지연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감추경	p. 1,102
계속사업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1,300	-	1,300	○실시설계 결과 및 교통공사 요청사항 등 반영으로 증가한 사업비 편성	p. 1,106
계속사업	월드컵 대교 건설	25,657	16,000	9,657	○양화인공폭포 재조성 등 기존 설계 미반영분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p. 1,110
계속사업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	97	-	97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사업관리 필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편성	p. 1,114
계속사업	가공배전선 지중화	10,669	4,332	6,337	○'24년 2월 한전 승인을 득한 4개소 공사비 및 기존사업 1개소 추가 공사비 편성	p. 1,130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업						
계속사업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800	1,900	△1,100	○건축설계 공모(~8월) 이후 설계용역을 차수계약으로 추진예정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설계비 감추경	p. 1,134
계속사업	정릉천고가교 보수	3,432	3,032	400	○'23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수1순위 구간 긴급보수비 편성	p. 1,141
신규사업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줄음킴터 설치	1,500	-	1,500	○자동차전용도로상 줄음킴터 1개소 조성비 편성	p. 1,144
계속사업	국고보조금 반납(도로시설과)	427	-	427	○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 절약,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
계속사업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8,920	8,620	300	○한강교량명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자재비용 편성	p.1147
계속사업	이수고가 보강공사	2,434	1,600	834	○압송관로 이설 등 신규공종 공사비 및 물가변동 추가공사비 편성	p. 1,151
계속사업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9,873	9,873	-	○(재원변경) 소방안전교부세 1,140백만원 증, 자체재원 1,140백만원 감	-

IV. 검토의견

1. 개 요

1) 일 반 회 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1,718억 78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4,611억 67백만원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과 동일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21.4% 감소한 194억 17백만원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106.6% 증가한 72억 30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3.3% 증가한 72억 30백만원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 입 : 기정예산 대비 4.8% 증가한 757억 96백만원

나) 세 출 : 기정예산 대비 5.9% 증가한 6,705억 6백만원

○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1조 5,110억 원) 증가한 47조 2,991억원 규모로, 추경 재원은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임.

○ 이번 추경예산(안)의 투입 주요 분야는 ‘민생경제·동행(3,682억원)’, ‘안전(1,137억원)’, ‘매력(773억원)’ 3개 분야이며,

○ 이 중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금회 26건의 사업에 32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중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는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매력’ 분야 사업으로서 공사진행 중인 신월IC~화곡고가 사거리 구간의 안전상 위험이 있는 노후된 가시설을 철거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상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 나머지 사업들은 ‘안전’ 분야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동부간선도로 내 노원교 진출램프의 방음판 설치 사업과 보행공간 및 통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음.
- 따라서 금회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안전’, ‘매력’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로 시가 밝힌 추경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2. 분야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

(1) 일반회계

- 2024년도 제1회 재난안전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 9천 2백 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관리’와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2개 사업과 관련하여 ’23년도 사업 완료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을 세입 처리한 것임.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	92	9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83	83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9	9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먼저,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관리’은 방역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 ’23년 예산 5억 34백만원(국비 2억 67백만원 포함) 중 3억 69백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1억 65백만원 중 반납해야 하는 국비 8천 3백만원임.

- 다음으로,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설비 원격점검 제도 도입에 따라 가로등 분전반에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하고 관제센터로 정보(전압, 전류, 누전 등)를 실시간 전송하여 원격으로 전기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23년도 예산 6억 5천만원(국비 3억 25백만원 + 시비 2억 55백만원 + 구비 7천만원) 중 6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2천만원 중 국비 9백만원을 반납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해당 세입은 금회 세출예산안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포함되어 있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의 ‘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비 반납액을 편성한 것임.
- 이는 동 사업이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서울시와 구리시 전체구간의 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총사업비 조정협의 이후 발주가 가능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 구리시 구간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어 실시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조정협의까지 원만한 추진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에 따른 조치이며 사업지연 사유는 금회 세출예산 감액사유와 동일함.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	3,730	3,73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3,730	3,730	'태릉~구리C간 도로확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400억원 대비 35억 6백만원이 증가한 435억 6백만원으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에 편성된 2024년도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발행사업의 변경,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 절약',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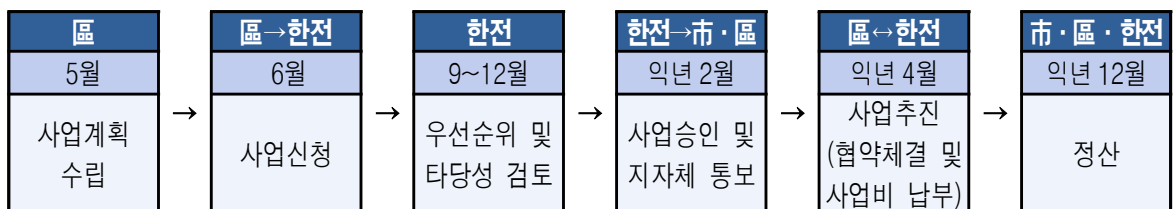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A)	증감 (B)	추경예산안 (A+B)	사유
장	관	항	목				
총 계				40,000	3,506	43,506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	기금	-	3,108	3,108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국고보조금 편성

지방채	국내차입금	차입금	지방공공 자금채	40,000	△4,000	40,000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경공간 조성 사업’ 지방채 축소발 행
지방채	국내차입금	차입금	지방공공 자금채		4,000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 지방채 추가발행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398	398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 절약’, ‘침 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먼저, ‘가공배전선 지중화’는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분담금(50%), 국비(20%), 시비(15%), 구비(15%)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¹⁾으로 한전은 자치구에서 신청(매년 6월)한 사업지를 검토·승인하여 익년 2월 최종 사업지를 발표함에 따라



[그림]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절차

○ '24년 2월 한전에서 승인한 14개소 사업 중 당해연도 구비가 확보되고 사전절차(투자심사)²⁾를 이행한 4개소에 대해 국

1) 일반사업, 그린뉴딜사업 등 지중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칭비율이 다름.

[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비 분담비율

(단위 : %)

구분	계	국비	한전	시	구	비고
그린뉴딜	100	20	50	15	15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일반사업	100	-	50	25	25	

2) 자치구 투자심사 대상 :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
시 투자심사 대상 : 총 공사비 : 60억원 이상

고보조금 31억 8백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 참고로, 사전절차(투자심사)가 미이행되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10개소는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표] '23년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현황

NO	지자체		사업명	지중화거리		총사업비 (백만원)		
	광역시	기초		km	C-km	배 전	통 신	소 계
1	서울	강북구	한천로 수송초등학교 지중화공사	0.4	0.7	1,559	509	2,068
2	서울	광진구	중광초등학교 지중화공사	0.9	2.5	4,075	1,548	5,623
3	서울	광진구	건대부속중학교 지중화공사	0.5	1.2	2,666	1,751	4,417
4	서울	구로구	다자탈로(다자탈33길) 노후산단 지중화사업	0.5	1.3	1,899	1,236	3,135
5	서울	금천구	문성로(영남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0.5	1	1,732	1,767	3,499
6	서울	금천구	금하로(동일여고 외) 통학로 지중화사업	0.7	1.6	2,581	2,679	5,260
7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문성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0.7	1.8	2,657	4,917	7,574
8	서울	도봉구	방학초등학교 지중화공사	0.7	1.7	3,913	1,510	5,423
9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 대광중·고 지중화	0.8	0.8	4,826	1,262	6,088
10	서울	서대문구	한성과학고등학교 지중화사업	0.3	0.4	1,463	902	2,365
11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양재초교)	0.6	0.9	1,797	1,459	3,256
12	서울	성동구	금옥초등학교 지중화공사	1.3	2.2	3,385	870	4,255
13	서울	양천구	등촌로 목동개비시장 지중화공사	0.5	1	1,854	1,074	2,928
14	서울	중구	중구 흥인초 통학로 지중화	0.2	0.5	1,699	603	2,302
합 계				8.6	17.6	36,106	22,087	58,193

- 다음으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에서는 당초 100억원의 지방채발행(‘24년 세출예산액 121억 9백만원)을 계획했던 것에서 40억원을 축소발행하고,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에서는 당초 200억원의 지방채발행

(‘24년 세출예산액 250억원)을 계획했던 것에서 40억원을 추가 발행한 것으로,

- 이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에서 영등포 양평동 안양천 제방 굴착공사 공정이 연기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시설비 40억원의 감액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축소한 것이며,
-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의 지정 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자체재원을 대체하는 지방채발행액의 규모만 증가된 것으로 별도의 사업내용 변경은 없음.
-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의 3억 98백만원 증액은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 절약’,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23년 사업 완료 후 남은 국고보조금 잔액이 세입처리된 것으로,
-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절약’ 사업은 가로등의 밝기를 교통량에 따라 자동 조절하는 양방향 원격조명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역에너지 절감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3천 4백만원)임.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침수위험 지하차도 진입구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이상폭우로

인한 침수사고로부터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국비 50% 매칭)으로,

- 당초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를 전국 동일하게 차선 당 단가 1억 5천만원(국비75백만원, 시비75백만원)으로 책정함에 따라 서울시에는 국비 12억 75백만원이 교부되었으나
- 실제 설치과정에서 2개 차선 이상인 지하차도의 경우 도로 폭에 따른 규격 차이로 진입차단설비와 전광표지판 비용만 일부 증가하고 CCTV, 전기, 통신, 토목공사 비용은 1개 차선 공사비와 유사하게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표] 참고).

[표]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공사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1개 차선 1개소	2개 차선 1개소	2개차선 2개소 (양방향)	비고
계	257,939	269,500	479,900	
진입차단설비	137,479	145,000	290,000	도로 폭에 따라 큰 규격 사용
CCTV	10,000	10,000	20,000	
전광표지판	11,960	16,000	32,000	도로 폭에 따라 큰 규격 사용
전기공사	90,000	90,000	126,000	동일 지하차도 양방향 설치 시 도 급비 1.4배
통신공사	8,000	8,000	11,200	
토목공사	500	500	700	

- 참고로, 해당 세입은 금회 세출예산안에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포함되어 있음.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등 5건에 3억 4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 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총 계			3,124	2,780	344	
1	재난 안전 정책과	기본경비	801	794	8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편성
2	재난 안전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재난안전정책 과)	92	-	92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축관리, 재난 피해자 회복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3	도로 관리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2,085	1,986	99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조기소진으로 추가 편성
4	도로 시설과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	131	-	131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시기 도래에 따른 용역비 편성
5	도로 시설과	국고보조금 반납(도로시설과)	15	-	15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사업별설명서 p. 1127)

- 동 사업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손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19억 86백만원 대비 9천 9백만원(5%) 증가한 20억 8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084,952	(x-) 1,985,952	(x-) 99,000
공공운영비	(x-) 1,901,952	(x-) 1,901,952	(x-) 0
배상금등	(x-) 183,000	(x-) 84,000	(x-) 99,000

- 시는 도로의 파손이나 변형 또는 도로시설물 등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발생 시 지급담보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매년 가입³⁾하고 사고 발생으로 배상금 지급 시에는 자기부담금(1건당 최대 3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 24년도 4월 기준 배상금(자기부담금) 예산집행률이 64%로 지난 4년간 평균 배상금 예산집행률(15%) 보다 약 4배 조기 집행됨에 따라 우기철 도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한 것임.

3)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 가입기간 : 매년 1.1. ~ 12.31. (최초가입 : '08.2.23.)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금액 : 1,898 백만원
- 가입대상 : 시도 1,192.27km
- 배상한도 : 사고당 1억원, 구간당 2억원(자기부담금 : 사고당 30만원)

[표] 최근 5년간 배상금등(자기부담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소요예산 (A)	4. 16. 기준		12. 31. 기준		비 고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액 (C)	집행률 (C/A)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가입 배상금등 (305-01)	평 균	115	18	15%	79	69%	'20~'23년
	2020	100	12	12%	83	83%	
	2021	120	34	28%	73	61%	본예산 70 추 경 50
	2022	120	7	6%	74	61%	
	2023	120	18	15%	84	70%	
	2024	84	53	64%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상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 최근 5년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사고 신고 현황([표] 참고)을 살펴보면 매년 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표] 최근 5년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및 유형별 사고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공제회비	도로상 사고신고 건수					
		계	도로파손	도로변형	도로부속물	보도	기타
2019	1,075	455	151	17	78	113	96
2020*	1,078	816	450	17	96	136	117
2021	1,189	702	328	15	72	129	158
2022	1,431	796	384	18	75	204	115
2023	1,645	964	365	34	93	317	155
평 균	1,284	747	336	20	83	180	128

* 2020년의 경우 역대 가장 긴 장마로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함.

- 그만큼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바,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파손 발생 시 빠른 복구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설명서 p. 1138)

- 동 사업은 제2차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재난 대비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1억 3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1,000	(x-) 0	(x-) 131,000
시설비	(x-) 131,000	(x-) 0	(x-) 131,000

- 시는 공동구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⁴⁾에 따라 10년 단위로

4)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구 설치의 기본방향
 2. 공동구가 설치되는 지역·지구 등의 현황
 3. 공동구가 설치되는 도로의 노선 및 노선별 설치 우선순위
 4.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제1차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2015~2024)’이 2024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2025~2023)’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제2차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2025~20234) 수립 용역 시행계획

- 용역기간 : 2024. 8월 ~ 2025. 9월
- 과업내용 : 제1차 기본계획 정비를 통한 공동구 설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최신 기술을 도입한 공동구 안전관리 개선방향 검토

□ 제1차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2015~2024)

- 기본방향 설정 : 서울시 재정여건, 권역별 균형개발 고려
 - 연계사업과의 병행설치로 사업비용 절감 가능 구간 우선 설정
 - 공동구 의무 설치대상 확대 및 건설비용 국·시비 지원 필요성 제시
- 기본계획 내용 : 공동구 신설 타당성 검토 (주·보조간선 90개 노선, 725.27km)
 - 중·단기 : 경전철, 영동대로 개발 등과 연계 권역별 노선 제시
 - 장기검토 : 장기검토 대상 노선 중 권역별 우선순위 제시

구 분	중·단기 계획			장기 검토 대상	
	연장(km)	공사비(억)	연계 사업	연장(km)	공사비(억)
계	12.51	2,990.2		463.72	112,825
동남권	1.90	420.0	✓ 영동대로 복합개발	142.52	36,066
서남권	2.80	681.0	✓ 신림선 경전철	141.35	33,724
동북권	6.31	1,542.0	✓ 동북선 경전철	98.34	23,099
서북도심권	1.50	346.0	✓ 서부선 경전철	81.51	19,936

○ 종합평가 결과 시범사업 구간 제시

- 개착식 공사 여건, 국내 사례, 연계 사업과의 병행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동대로 구간(영동대교 남단~삼성역사거리)을 시범사업 구간으로 제시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바 있으나 미반영)

○ 소요예산 : 314,350천원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 (2024. 4. 4.)

- 1차년도('24년) : 131,000천원 (5개월) / 2차년도('25년) : 183,350천원 (7개월)

5.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공동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확보에 지장이 예상되는 지역

2. 도로의 건설·보수 등 관련 사업과 동시 시행하여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3. 기술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공동구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공동구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 추진방법 : **기술용역**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연구기관 +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 주요 과업내용
 - 도심지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도출
 - 대규모 개발사업, 노후 지하매설물 정비 등과 연계한 공동구 설치 방안 검토
 - **최신 기술 활용한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
- 향후일정(안)
 - '24. 6월 :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 '24. 7월 : 제안서 평가 실시
 - **'24. 8월 :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보고**
 - '24. 12월 : 1차연도 용역 완료
 - '25. 1월 : 2차연도 용역 시행 (~'25. 9월)

- 제1차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이 '24년도에 종료되어 동 사업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위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 10년 단위로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전에 사업추진을 계획할 수 있었던바 추경이 아닌 '24년도 본예산에 기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처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토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관리계정)’ 사업 1건에 5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총 계			-	5,300	△5,300	
1	도로 계획과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교통관리계정)	-	5,300	△5,300	○영등포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 신설 추진에 따라 착공시기 조정('24년 하→ '25년 상)하여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감추경

1)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별설명서 p.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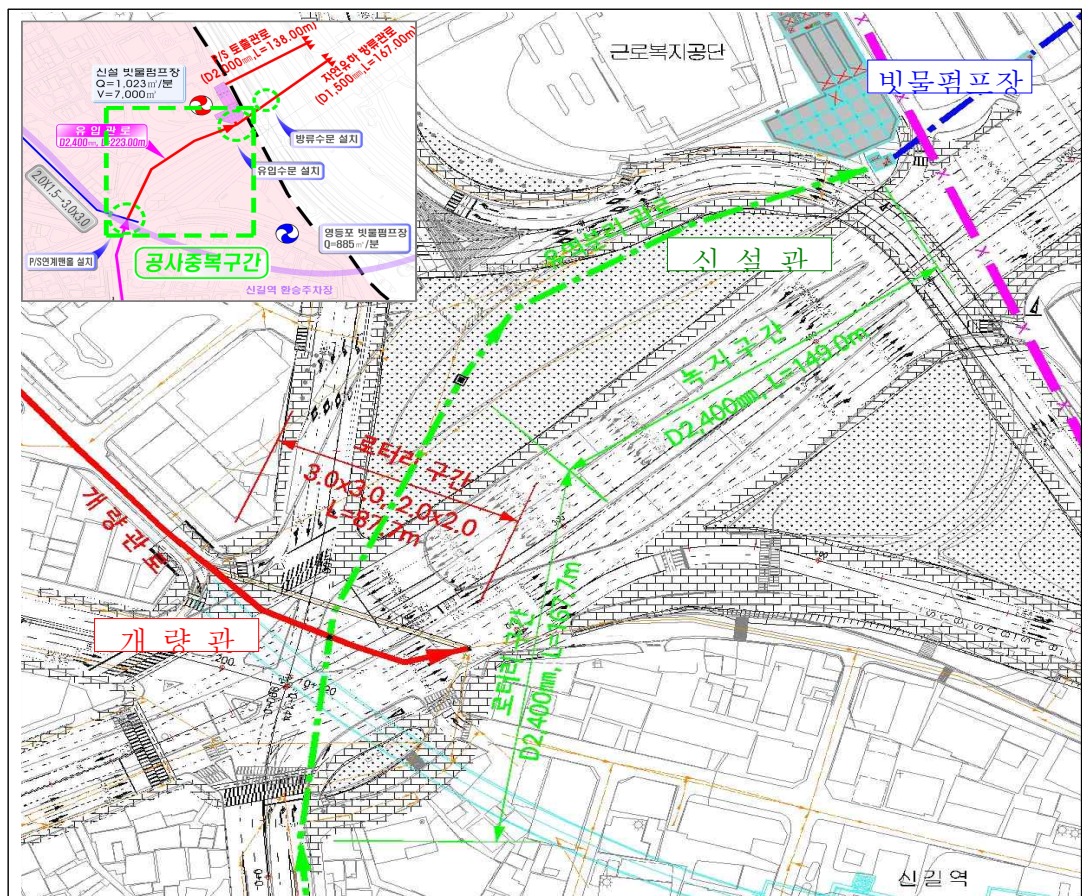
- 동 사업은 영등포로터리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하구조를 개선(고가철거 포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53억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0	(x-) 5,300,000	(x-) △5,300,000
시설비	(x-) 0	(x-) 5,000,000	(x-) △5,000,000
감리비	(x-) 0	(x-) 300,000	(x-) △300,000

- 이는 동 사업대상지와 일부 구간이 중복되는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침수예방 사업의 시급성과 공사 중복구간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관련 유입관로를 먼저 설치하고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사시기를 협의·조정함(‘24년 하반기→‘25년 상반기 착공)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를 감액하려는 것임.



[그림]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공사와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 위치도

- 참고로, 영등포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관련하여 ‘24.4월 영등포로터리 사업구역 내 유입관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24.9월부터 12월까지 영등포로터리 유입관로를 우선 시공 후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공사는 ‘25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임.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등 2건에 2억 3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표] 참조).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총 계			7,230	7,000	230	
1	도로 계획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500	7,000	△3,500	○도시계획시설 입안 사전절차와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으로 착공 지연되어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감추경
2	도로 계획과	국고보조금 반납(도로계획과)	3,730	-	3,730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1)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별설명서 p.1122)

- 동 사업은 서울 중랑구와 구리 인창동 간 광역도로(연장 4.78km(서울시 1.38km, 민자 1.77km, 구리 1.63km))를 확장(폭 6→8차로(서울지구간), 폭 4→6차로(구리시 구간))하려는 것으로 당해 연도 기정예산 70억원 중 35억원(50%) 감액한 35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3,500,000) 3,500,000	(x3,500,000) 7,000,000	(x-) △3,500,000
시설비	(x3,000,000) 3,000,000	(x3,000,000) 5,980,000	(x-) △2,980,000
감리비	(x500,000) 500,000	(x500,000) 1,000,000	(x-) △500,000
시설부대비	(x-) 0	(x-) 20,000	(x-) △20,000

○ 이는 동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⁵⁾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 서울시, 구리시, 그리고 민자구간으로 이뤄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⁶⁾으로

○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가 완료될 때마다 서울시 구간과 구리시 구간 통합으로 기재부(서울시 + 구리시→국토부→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협⁷⁾의를 거쳐야 하나

5)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6)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건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② ~ ⑦ (생략)

- 구리시 구간의 실시설계가 아직 미완료 상태이며 실시설계가 완료('24.8월 예정)되더라도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선행되어야 공사착공이 가능한데,
- 실시설계과정에서 현재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재부 타당성재조사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인해 연내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협의 과정에서도 구리시의 증액과 설계지연으로 인해 서울시 구간 사업 추진까지 지연되어 왔으며 지금의 구리시 실시설계 역시 미완료 상태임.
- 이에 서울시는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 구간 우선착공을 목표로 예산 편성을 감행했었으나 결국 구리시 반대로 우선착공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70억원 중 시비 3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나머지 국비 35억원은 감추경이 불가하므로 이월하여 내년도 공사 및 보상 시행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7)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2.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이하 'ISMP'라고 한다), 분석, 설계, 발주 및 계약,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 ②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과학기술기본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한다.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등 총 17건에 371억 2백만원을 순수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추경예산안 사업목록(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합 계			143,558	106,485	37,102	
1	도로 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 부시계)	5,100	-	5,100	○ 수락고가 방음터널 해체 및 재설치 소요 공사비 편성
2	도로 계획과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1,200	3,000	△1,800	○ 설계심의 등 결과 반영으로 설계용역 지연,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감추경
3	도로 계획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53,690	40,000	13,690	○ 1단계 구간 노후 가시설 해체 공사비 편성
4	도로 계획과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10,380	5,020	5,360	○ 보상결정된 2개 필지 보상비 및 하반기 임료 편성
5	도로 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8,109	12,109	△4,000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감추경
6	도로 계획과	성동교 확장	-	1,000	△1,000	○ 하천점용허가 협의지연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감추경
7	도로	신당역~신당지하상	1,300	-	1,300	○ 실시설계 결과 및

	계획과	가 연결통로 설치				교통공사 요청사항 등 반영으로 증가한 사업비 편성
8	도로 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25,657	16,000	9,657	○양화인공폭포 재조성 등 기존 설계 미반영분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9	도로 계획과	중량천 보행교량 건설	97	-	97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사업관리 필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편성
10	도로 관리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10,669	4,332	6,337	○'24년 2월 한전 승인을 득한 4개소 공사비 및 기존사업 1개소 추가 공사비 편성
11	도로 관리과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800	1,900	△1,100	○건축설계 공모(~8월) 이후 설계용역을 차수계약으로 추진예정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설계비 감추경
12	도로 시설과	정릉천고가교 보수	3,432	3,032	400	○'23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수1순위 구간 긴급보수비 편성
13	도로 시설과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줄음شط터 설치	1,500	-	1,500	○자동차전용도로상 줄음شط터 1개소 조성비 편성
14	도로 시설과	국고보조금 반납(도로시설과)	427	-	427	○ 스마트 도로조명 에너지 절약,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편성
15	교량 안전과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8,920	8,620	300	○한강교량명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자재비용 편성
16	교량 안전과	이수고가 보강공사	2,434	1,600	834	○압송관로 이설 등 신규공종 공사비 및 물가변동 추가공사비 편성
17	교량 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9,873	9,873	-	○ (재원변경) 소방안전교부세 1,140백만원 증, 자체재원 1,140백만원 감

1)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 ~ 의정부시계)(사업별설명서 p.1081)

- 동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녹천교부터 의정부시계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동북부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당초 미편성했던 예산 5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5,100,000	(x-) 0	(x-) 5,100,000
시설비	(x-) 5,100,000	(x-) 0	(x-) 5,100,000

- 이는 기존 동부간선도로와 신설하는 노원교 진출램프 접속을 위해 기존 수락고가 방음터널 일부구간을 해체하고 진출램프교까지 방음터널을 확장하여 재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 노원교 진출램프는 '22.10월 착공하여 '24.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23년 명시이월한 시설비(약 96억원, '24년 본예산 미편성)는 금년도 3분기 내 전액 소진이 예상되어 4분기에 방음터널 해체 및 재설치를 위해서는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임.
- 한편, 노원교 진출램프를 신설하는 배경은 '20.12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확장 개통 후 도봉·노원구청으로부터 진출입로 관련 교통불편 민원8)이 지속적으로 제기('21.1.~8.)되어 동부간선

도로 진출입로 개선계획(도로계획과-15293, '21.11.26.)을 수립하면서 노원교 진출램프 신설을 결정한 것으로,



[그림] 노원교 진출램프 신설 계획

○ 동부간선도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시행된 도로확장공사가 또다른 교통정체를 발생한 형태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출램프를 추가 신설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초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계획단계에서 교통영향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인바, 도로의 신설 및 확장공

- 8) 당초 개통된 도봉지하차도 진출로를 4개소(상계,창동,녹천,월계1교)로 계획했으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봉지하차도를 하나로 연장해 진출로가 2개소(상계·월계1교)로 줄어들면서 상계교 교차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발생
 ⇒ 수락고가교에서 노원교 방향 진출램프 설치와 노원교 1개 차로를 확장해 동부간선도로(성수방면)에서 도봉구(도봉역)방향과 노원구(수락산역) 방향으로 진출토록 하여 교통불편 해소

사 등을 시행할 때는 교통영향분석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2)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별설명서 p.1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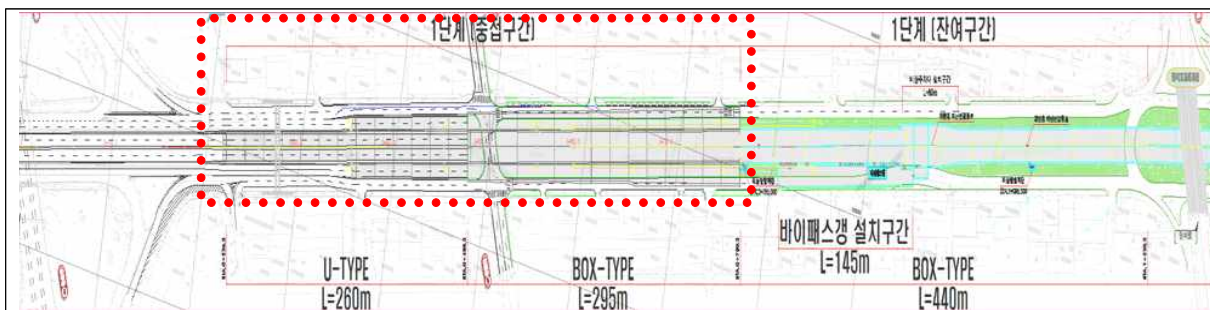
- 동 사업은 신월여의지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및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00억원 대비 136억 9천만원(34%) 증가한 53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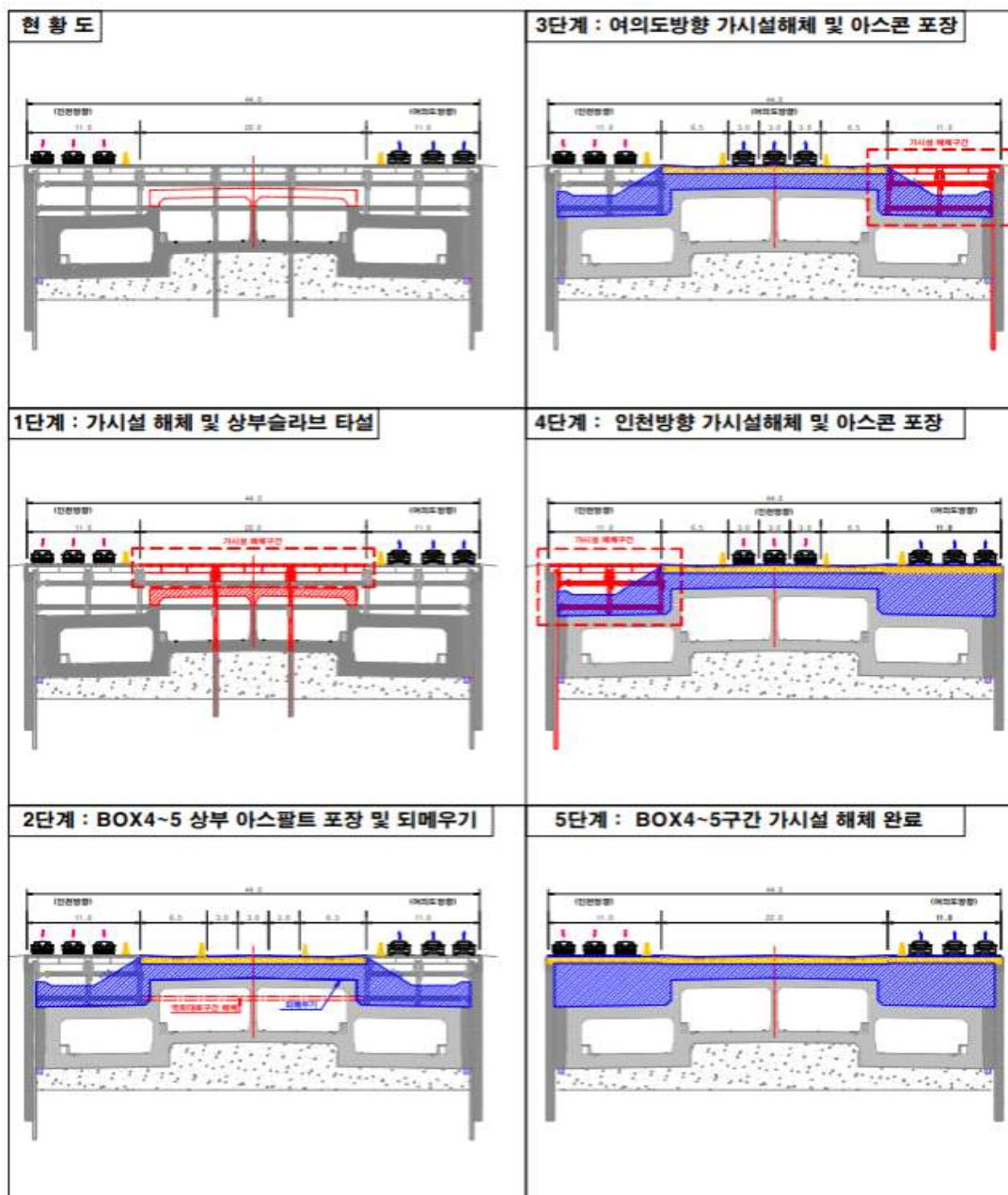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53,690,000	(x-) 40,000,000	(x-) 13,690,000
시설비	(x-) 51,440,000	(x-) 38,250,000	(x-) 13,190,000
감리비	(x-) 2,250,000	(x-) 1,750,000	(x-) 500,000

- 이는 1단계 구간인 가시설 해체, 지하구조물 시공 및 퇴메우기를 시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400억원은 중첩구간 구조물 공사, 잔여구간 토공사 등으로 상반기 내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나머지 부족분에 해당함.



[그림] 국회대로 1단계 구간 평면도

- 한편, 1단계 구간의 가시설 해체는 국회대로 도로폭을 3구간 (여의도방향 차로부, 인천방향 차로부, 중앙 철거부)으로 구분하여 교통처리를 감안해 중앙 철거부, 여의도방향 차로부, 인천방향 차로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연계된 공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회 증액은 불가피하다 사료됨.



[그림] 중첩구간 구조물 시공 및 가시설 해체 순서도

3)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사업별설명서 p.1094)

- 동 사업은 도로편입토지(미지급용지 및 국공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 또는 임료 지급 등 손실보상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50억 2천만원 대비 53억 6천만원 증가한 10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0,380,000	(x-) 5,020,000	(x-) 5,360,000
시설비	(x-) 10,380,000	(x-) 5,020,000	(x-) 5,360,000

- 이는 ‘24년 자치구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상이 결정된 2개 필지(목동 904-18, 염리동 148-12)에 대한 추가 매수비용 46억 1천만원과 임료 지급대상 23 필지에 대한 하반기 임료 부족분 7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 시는 금년 4월 기준으로 ‘24년 기정예산 50억원 중 43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억원은 상반기 임료로 지출할 예정에 있음.
- 금회 증액사유가 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로 보상이 결정된 토지 매수보상금 및 하반기 정기 임료에 대하여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불필요한 소송 및 이자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액편성은 합당한 조치라 사료됨.

○ 한편, 보상심의위원회 의결로 보상이 결정되는 절차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대리인이 보상신청을 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자치구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로 보상이 결정된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 전제할 수 있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소송 제기에 의한 보상보다 부담이득금(이자 별도)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4) 신당역 ~ 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사업별설명서 p.1106)

○ 동 사업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지하상가 등 주변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21년도에 공사착공하여 현재까지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금회 추가증액분 13억원을 편성함.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00,000	(x-) 0	(x-) 1,300,000
시설비	(x-) 1,285,000	(x-) 0	(x-) 1,285,000
감리비	(x-) 15,000	(x-) 0	(x-) 15,000

- 이는 당초 35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실시설계 결과 반영(5억 3천만원), 야간공사 전환으로 노무비 증가(4억 7천만원), 지반안정 공법 추가반영(4억 5천만원), 공사중 안전점검 및 계측기 추가설치(2억 5천만원)로 17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 중 4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23.12월)하고 나머지 13억원을 편성한 것임.
-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실시설계 결과 반영(5억원 3천만원)은 해당 시설물이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관련 도면이 없는 상태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기초해 당초 사업비 35억 원을 편성했었으나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장물 간섭 등이 나타나 일부 공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며,
- 다음으로, 야간공사 전환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4억 7천만원)는 연결통로 신설공사 대상지 부근 전통시장 상인 및 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감안하고 지하철 운행 시간을 고려한 교통공사의 요청을 반영한 것임.
- 또한, 지반안정공법(그라우팅) 추가반영(4억 5천만원)과 공사중 안전점검 및 계측기 추가설치(2억 5천만원)는 지하철 시설물 관련 교통공사와의 협의 시 추가적인 안전확보를 위해 추가결정된 것임.
- 따라서 금회 증액은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계획단계에서 교통공사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공사 시간대 조정, 지반안정 공법, 지하철시설물 관련 안전점검 및 계측기 설치 등의 협의

사항은 파악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5) 월드컵 대교 건설 (사업별설명서 p.1110)

- 동 사업은 성산대교와 그 주변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내부 순환도로와 증산로, 서부간선도로, 공항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왕복 6차로(31.4m), 연장 1,980m의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160억원 대비 96억 57백만원 증가한 256억 5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5,657,000	(x-) 16,000,000	(x-) 9,657,000
시설비	(x-) 23,457,000	(x-) 14,200,000	(x-) 9,257,000
감리비	(x-) 2,200,000	(x-) 1,800,000	(x-) 400,000

- 이는 '23.12월 전구간 도로 개통을 완료하고 잔여공종 추진을 위한 예산의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며, 양화인공폭포 등 토목·조경공사(40억 57백만원), 안양천 둔치복구(15억원), 공사부지(아리수정수센터) 복구(27억원), 설비(전기, 통신)공사(10억원), 감리비(4억원) 등을 계상한 것임.
- 동 사업(총사업비 4,739억원)의 경우 연결램프 등의 설치 시 기존 시설물들과의 저촉·조정에 대한 재조성 또는 복구, 공사기간 동안 점용했던 부지의 원상복구, 유지관리부서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 '25년 준공 시까지 18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나 금회에

는 당해연도 잔여공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96억 57백만원
만을 편성한 것이며, 차년도 본예산 89억 43백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임.

[표] 잔여공종 총사업비

연번	구 분	내 용	사업비				비고
			합계	토목	조경	설비	
총합계 (총 12건)			186	115	51	20	
1	유관부서 요구사항	합 계(5건)	70	41	12	17	
		① 난지한강공원 조경 및 시설물 복구 (테니스장 등)	16	14	2	-	
		② 자동 염수분사시설 추가설치 (북단R-D,E, 남단R-A)	19	14	-	5	
		③ 교량 유지관리시설물 보완 및 추가 설치 (본선개통구간)	8	8	-	-	
		④ 기존 양화교 및 접속램프 시설물 복구	5	5	-	-	
		⑤ 양화 근린공원 조성공사	22	-	10	12	
2	복구공사 현장여건반 영	합 계(4건)	76	34	39	3	
		① 풍수해기간 하천내 가시설 철거 및 재설치(가교, 가축도)	16	16	-	-	
		② 안양천 조경 복구	15	-	15	-	
		③ 안양천 시설물 (호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복구	18	18	-	-	
		④ 영등포정수센터 시설물 및 조경식재 복구	27	-	24	3	
3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연장	합 계(2건)	24	24	-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공사비)	19	19	-	-	
		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보험금 등	5	5	-	-	
	감리비	합 계(1건)	16	16	-	-	
		③ 물가변동 및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	16	16	-	-	

○ 따라서, 잔여공종들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장기간 계
속되는 월드컵대교 건설사업이 '25년에는 계획대로 최종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6)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등 도로계획과 소관

감추경 사업 (사업별설명서 pp.1085, 1098, 1102)

- 도로계획과의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서부간선 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성동교 확장’은 사업 추진 지연을 사유로 각각 기정예산 대비 60%, 33%, 100%를 감추경하고 있음.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A+B)	기정예산 (A)	증감 (B)	사 유
합 계			143,558	106,485	37,102	
1	도로 계획과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1,200	3,000	△1,800	○설계심의 등 결과 반영으로 설계용역 지연,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감추경
2	도로 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8,109	12,109	△4,000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감추경
3	도로 계획과	성동교 확장	-	1,000	△1,000	○하천점용허가 협의지연으로 연내 집행 어려운 공사비 및 감추경

- 상기 3건의 사업은 모두 각종 영향평가, 심의,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소요로 연내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감액한 것임.
-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위한 설계심의,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공기적정성심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심의 등의 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착공이 지연된 경우이며,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굴착 공사 시행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지연, 하천점용허가 협의 미완료 등의 사유로 해당 제방 굴착공사 공정이 지연되었고,
- ‘성동교 확장’ 사업은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미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내 허가가능여부도 불확실하여 이에 따른 조치에 해당함.
- 사전절차의 경우 협의와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그 소요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간 서울시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여겨지므로 이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7)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별설명서 p. 1130)

- 동 사업은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43억 32백만원 대비 63억 37백만원(146%) 증가한 106억 6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3,108,000) 10,668,500	(x-) 4,331,500	(x3,108,000) 6,337,000
시설비	(x3,108,000) 10,668,500	(x-) 4,331,500	(x3,108,000) 6,337,000

- 이는 24년도에 신규 추진이 확정된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금회 세입예산 편성과 연동하여 세출예산에 49억 97백만원(국고보조금 31억 8백만원 + 시비 18억 89백만원)⁹⁾을 편성한 것과,

[표] 24년도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분담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區	사업명	총 사업비 (a+b+c+d)	한전· 통신사(a)	국비(b)	시비(c)	구비(d)
1	서대문	한성과학고등학교	2,365	950	473	239	703
2	광진	건대부속중학교	4,417	1,988	883	552	994
3		중광초교	5,623	2,442	1,125	659	1,397
4	구로	다사 33 33길 노후산단	3,135	1,505	627	439	564
총계			15,540	6,885	3,108	1,889	3,658

- '22년도에 한전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는 '전곡 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의 추가분담액 13억 41백만원에 해당함.
- '전곡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79억 16백만원으로 국비(12억 15백만원)를 포함한 24억 15백만원(구비 별도)이 '22년도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추가 통신공사비 53억 64백만원이 발생되어 시 분담비율¹⁰⁾에 따라 금회 예산을 반영한 것임.

9) 24년도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4건은 모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임.

-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사업비 매칭 비율: 한전:국비:시비:구비 = 50:20:15:15

- 일반 지중화사업 사업비 매칭 비율: 한전:시비:구비 = 50:25:25

10) 가공배전선 추가공사비 분담 비율: 한전:시비:구비 = 50:25:25

(※가공배전선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국비 지원지침 상 추가공사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음)

[표] '전농로(전곡초교)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분담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장 (km)	총 사업비 (a+b+c+d)		한전 통신사 (a)	국비(b)	시비(c)	구비(d)
전농로 (전곡초교)	1.8	당초 사업비 (2022년)	7,916	2,346	1,215	1,200	3,155
		추가분담액 (추가 통신공사비)	5,364	2,682	-	1,341	1,341
		최종 사업비 (2024년)	13,280	5,028	1,215	2,541	4,496

*향후 정산에 따라 변동 가능

-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게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올해 한전으로부터 승인되었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추진되지 못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이 요구됨.

8)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별설명서 p. 1134)

- 동 사업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여 도로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9억원 대비 11억원(58%)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800,000	(x-) 1,900,000	(x-) △1,100,000
시설비	(x-) 800,000	(x-) 1,750,000	(x-) △950,000
감리비	(x-) 0	(x-) 150,000	(x-) △150,000

- 이는 당초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비를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17억 5천만원)와 설계감리비(1억 5천만원)를 편성했던 것이나,
- 신청사 설계공모¹¹⁾가 8월말 완료 예정으로 '24년 9월부터 설계용역(12개월)을 시행¹²⁾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당 설계용역을 차수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1억원(시설비 9억 5천만원 + 설계감리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과거 시흥청사 건립과 선암장비보관소 조성 등 총 417억원¹³⁾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청사 이전을 실패하고 새로운 부지에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1) 설계공모 추진 : 일반 설계공모 (미래공간기획관)

- '24. 5. 22. : 설계공모 시행공고
- '24. 8. 2. : 참가자 작품접수 기한
- '24. 8. 8. ~ 19. : 기술심사
- '24. 8. 20. : 1차 심사
- '24. 8. 27. : 2차 심사
- '24. 8. 30. : 당선작 및 입상자 발표

12) 설계용역 추진 : 도시기반시설본부 ('24. 9. ~ '25. 8.)

13) 시흥청사 건립 등 기투입 예산 : 417억원

(시흥청사건립 289억원, 선암장비보관소 조성 37억원, 소공원 조성 91억원)

9) 정릉천고가교 보수 (사업별설명서 p. 1141)

- 동 사업은 내부순환로에 위치한 정릉천고가교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회 기정예산 30억 32백만원 대비 4억원(13%) 증액된 34억 3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431,681	(x-) 3,031,681	(x-) 400,000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x-) 3,431,681	(x-) 3,031,681	(x-) 400,000

-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14)에 따라 2023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본선 램프 구간의 포장손상으로 유수가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로 유입되면서 하부 콘크리트 열화 및 철근부식이 유발되고 있어 긴급보수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쉘터 설치 (사업별설명서 p. 1144)

- 동 사업은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졸음쉘터를 조성하고자 금회 신규로 15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500,000	(x-) 0	(x-) 1,500,000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x-) 1,500,000	(x-) 0	(x-) 1,500,000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44%가 졸음운전¹⁵⁾으로, 차가 막히고 졸려도 쉘터가 없어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은 물론 일부 운전자가 비상주차대(안전지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로 인해 사고위험 상존 및 긴급 상황에 대처가 곤란한 바,
- 시는 자동차전용도로 내 졸음쉘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한강변 경관도 감상할 수 있는 조망대 설치와 화장실 등 휴게소 기능을 제공하고자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쉘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중에 있음.

15) 최근3년간 자동차전용도로 사망사고 현황

-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쉘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계획 (도로시설과-5174)

노선명		연장	사망사고 원인 (최근3년,건)			
			계	졸음운전	무단횡단	운전미숙
서울시	올림픽대로	43.1km	5	2	2	1
	강변북로	29.4km	4	2	2	0

자료: 서울시시설공단 교통정보처

□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과업대상 : 자동차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 용역기간 : 2023. 12월 ~ 2024. 8월
- 용역비 : 98,000천원 (공단 관리위탁비 예산잔액 활용)
- 과업내용
 -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대상 후보지 기초 및 현장조사
 - 한강공원을 활용한 졸음쉼터 조성방안 검토
 -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기본계획(안) 수립

□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

- 사업내용 : 新 매력공간 운전자 쉼터 겸 선셋조망대 설치
 - 한강조망(조망대, 공원, 녹지) + 편의시설(화장실) + 졸음쉼터(주차장)
- 사업기간 : '24. 1. ~ '26. 12.
- 설치대상 : 올림픽대로·강변북로 4개소(기본계획 용역중 : '23.12. ~ '24.8.)

연번	대상지	컨셉	면적	시설배치(안)	착수	개략사업비	비고
1	올림픽대로 남단	일출	10,000㎡	주차장(38대), 화장실, 파고라	'24.上	30억	올림픽대로
2	양화대교 남단	마루탕	3,500㎡	주차장(11대), 화장실, 파고라	'25.下	15억	올림픽대로
3	성수대교 북단	(상행) 낙조	2,700㎡	주차장(11대), 화장실, 파고라	'25.下	15억	강변북로
		(하행) 낙조	2,700㎡	주차장(11대), 화장실, 파고라	'25.下	15억	
4	청담대교 남단	일출	15,000㎡	주차장(50대), 화장실, 파고라	'26.下	30억	올림픽대로



- 이에 설치장소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상 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기본구상 중에 있으며 올림픽대로에서 연이은 졸음사고 발생으로 쉼터 조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여 ‘올림픽대

교 남단' 부지를 시범구간으로 선정한 후 금회 시범사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임.

- 여기서, '올림픽대교 남단 부지'는 올림픽대로 상에 위치한 조각공원에 해당하는데 현재 조각공원이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쉽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됨.

□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시범구간 조성

- 추진대상 : 1개소(올림픽대교 남단) (※'24년 개통 목표 추진)

지번	면적	토지현황	비고
송파구 풍납동 386번지	10,000㎡	상수원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88서울올림픽 기념비(조각공원)



- 조성계획 : 주차장 확장, 화장실·조망대(파고라) 신설 등
- 추진일정 : '24.6.~'24.7.(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24.8.~'24.12.(공사시행)

- 동 시범사업은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쉼터 설치로 올림픽대로 운전 중에 잠시 쉬어가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됨.

- 다만,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른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는 만큼 졸음쉼터 시범조성 후 쉼터 진출입 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 쉼터 이용률 등을 모니터링하여 추후 대상지 확대에 반

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졸음쉼터 설치 대상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곳이 올림픽대로에는 3개소이나 강변북로에는 성수대교 북단 1개소만 검토되고 있어 한강 남쪽에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양화대교 졸음쉼터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쉼터예정지들은 한강의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위치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보완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발주하여 시행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경우 금년 본예산 중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관리 위탁’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포괄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11)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사업별설명서 p. 1147)

- 동 사업은 한강운행 선박 경로의 한강교량에 교량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의 이용 시민들에게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자 기정예산 86억 2천만원 대비 3억원(3.5%)이 증가한 8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8,920,000	(x-) 8,620,000	(x-) 300,000
시설비	(x-) 7,520,000	(x-) 7,220,000	(x-) 300,000
감리비	(x-) 1,400,000	(x-) 1,400,000	(x-) 0

-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주운수로에 위치한 한강교량은 가양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총 15개 교량¹⁶⁾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통과 교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량 상판 중앙부에 교량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선박이용 시민들에게 위치정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한강 교량명 안내표지판 설치



교량명 안내표지판(2.5 × 1.65m)



(안내표지판 설치 예시)

- 관련규정 : 도로표지규칙 제6조(표지판 규격), 제8조(도로표지 색채)
- 설치규격 : 폭 2.5m, 높이 1.65m / 바탕색 : 청색

- 시는 10월부터 한강에 리버버스를 운행할 계획¹⁷⁾임에 따라

16) 15개 교량: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17) 한강 리버버스 운행 계획

- 선착장 :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개)

리버버스 운행 전 한강 교량명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바, 동 사업이 10월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2) 이수고가 보강공사 (사업별설명서 p. 1151)

- 동 사업은 이수고가의 부족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를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6억원 대비 8억 34백만원(52%)을 증액한 24억 3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434,000	(x-) 1,600,000	(x-) 834,000
시설비	(x-) 2,434,000	(x-) 1,600,000	(x-) 834,000

- 이는 이수고가가 총 4개 라인으로 구성된 고가도로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3개 라인(A, B, C)은 내진받침을 교체하고 1개 라인(D)은 기초확대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 D라인 기초확대 공사를 위한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반포천 수위유지용 압송관로 등)이 확인되어 압송관로(230m)를 이송해야 함에 따라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운행시간 : 평일 6시30분~22시30분, 주말·공휴일 9시30분~22시30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 리버버스 제원: 길이 30m 폭 9.5m, 탑승인원 199명, 평균속도 17노트(31.5km/h), 최대속력 20노트(37km/h)

- 이용요금: 3천원(편도)



[그림] 이수고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반포천 유지용수 압송관로]



[반포천 점용부지]



[호안복구, 가도 철거]

○ 또한, 홍수기(5.15.~10.15.) 대비 시민안전을 위해 현재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중인 반포천 점용부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3억 5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¹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해 8천 4백 만원을 각각 증액함에 따른 것임.

-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하천 내 압송관로 이송 및 임시 적치장 원상복구 등의 공사는 신속히 마무리하여 홍수기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13)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 동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제12조¹⁹⁾에 따라 서울시 관리교량 138개소²⁰⁾에 대해

-
- 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자체재원 11억 41백만원을 감액하고 소방안전교부세 11억 41백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²¹⁾ 및 부칙(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²²⁾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의 25%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259억 93백만원) 중 11억 41백만원이 동 사업에 배정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20) 서울시 관리교량 138개소: 정밀안전진단 25개소, 정밀안전점검 110개소, 하자점검 3개소

2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2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6328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